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233호)

2025. 9.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2
[참고자료 1]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절차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5년 7월 2일

3. 회부일자 : 2025년 7월 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

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의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점검·보고 대상에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u>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설></u>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 ----- ----- ----- ----- ----- ----- ----- <u>보고하여야 한다.</u> ② <u>주관기관은 개발도상국의</u>

현행	개정안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u>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u>필요한 지원을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필요한-----.</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u>제1항 및 제2항-----.</u>

가.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 의무화(안 제22조제1항)

개정안 제22조제1항은 주관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동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전 부처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¹⁾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체계 >



자료: ODA KOREA 홈페이지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관기관의 보고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총괄·조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판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로 무상협력의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동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을 제정하였음. 해당 규정은 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상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 규정 >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이하 "집행관리 분과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④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를 시행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점검의 종류나 중요도 등과 무관히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점검이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점검 실시 및 보고(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추진은 일반적으로 ① 수원국 정부로부터의 수요 접수, ② 사업 심의, ③ 사업 승인, ④ 사업 시행 절차를 따르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개발도상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협력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²⁾ 개최,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 마련 등 무상협력과 관련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업을 발굴함.

개발도상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협력 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절차 등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수행됨.³⁾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참고자료 1】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절차

다만, 국가 사업 추진 시의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일반적으로 기관 자체의 감사, 감사원이나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기관에 의한 감사와 조사,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 등의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바, 주관기관이 시행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점검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외교부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점검의 내용이 현재 실시되는 점검과 그 범위가 크게 다름에 따라, 주관기관의 법적 권한 및 행정부담 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점검’은 이를 위한 다른 행정절차와의 유사성 또는 권한 다툼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대상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연간 시행되는 1,600여개의 무상협력 사업의 점검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현행법의 다른 조항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목적과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므로⁴⁾ 개정안에서 이와 별도로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만을 적시할 경우 법 적용의 혼돈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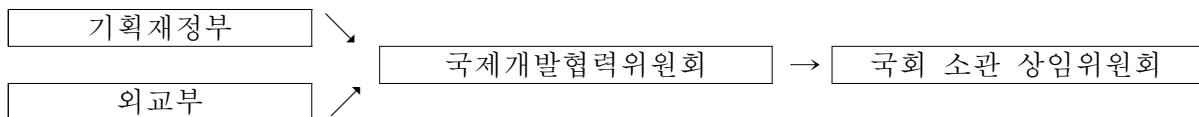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차주인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추진 의사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차관의 제공이 가능하며, 차주인 개발도상국이 입찰 등 절차를 실시하면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진행 단계별로 심사·승인을 실시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할 실익이 매우 낮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다. 점검 결과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안 제22조제4항)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 수행에 관한 점검(제22조제1항)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의 공정성·투명성에 관한 점검(안 제22조제2항)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보고 절차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연간 수행되는 국제개발사업의 수가 1,500개를 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기는 어려운바,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보고 대상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데, 예를 들어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검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등 실무적으로 다양한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할 시 보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만 국한될 수 있는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개정안이 점검 결과에 대한 주관기관의 1차적 또는 잠정적 조치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를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유상협력이 기획재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국회법 상 규정과 충돌하며, 중복 심의 등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자료 1】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절차

단계	진행절차
사업지원요청	수원국 정부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 정부에 제출
현지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입은행에 사업에 대한 심사 의뢰 - 수출입은행은 차관계약(Loan Agreement : L/A)의 주요내용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심사시 합의 내용에 대해 토의록(Minutes of Discussion : MOD)을 체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사업승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Pledge)을 결정 결정
승인통지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수원국 정부에 통보
정부간협정체결	외교부장관은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 : A/R)을 체결. 단, 정부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 F/A) 체결국의 경우는 시행약정 생략
차관계약교섭및체결	정부간 협정(시행약정 포함) 내용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차관계약 체결
컨설턴트고용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구매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와 구매계약 체결
자금지출	차관계약,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지출
평가	- 완공평가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등 평가 - 사후평가(완공평가 후 2년)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들의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개」, 대외경제협력기금, 2024.

문 의 처
02) 6788-5264